

고용보험    **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** (  예술인 )  
 산재보험    **이직 신고서** ( 특수형태근로종사자 )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5일		
사업장	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	이용개시번호	전화번호	팩스번호
	명칭	단위사업장 명칭	영업소 명칭	
	소재지			
우편번호( )				

보험사무 대행기관	번호	명칭	하수급인 관리번호(정부·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)
--------------	----	----	--

공통		고용보험								산재보험			
연번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자격 상실일	상실 코드	상실사유	예술인 보수총액		노무제공자 월보수액		이직일	휴대전화번호	이직사유 [ √ ]	
						해당 연도	전년도	해당 월	전월			공통	퀵서비스/ 대리운전기사만 작성
1												[ ]계약종료 [ ]사업의 폐업·휴업 [ ]기타( )	[ ]전속성 없음
2												[ ]계약종료 [ ]사업의 폐업·휴업 [ ]기타( )	[ ]전속성 없음
3												[ ]계약종료 [ ]사업의 폐업·휴업 [ ]기타( )	[ ]전속성 없음

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5제1항·제77조의7제1항·제77조의10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·제104조의12제1항·104조의13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1항제2호·제125조의9제1항제2호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·이직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사용자·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[ ]보험사무대행기관

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

### 유의사항

1.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(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)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「고용보험법」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(노무제공 종료)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.

### 작성방법

공통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란에는 주민등록표(외국인등록증)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를 적습니다.
고용보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,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등록번호를 적습니다.</li> <li>2.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작성하며,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적습니다.</li> <li>3. “자격상실일”란에는 자격상실 사유(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또는 노무제공 종료, 사망 등)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.        ※ (예시) 노무제공 종료일/상실일: 1월31일/2월1일, 1월30일/1월31일, - 사망일/상실일: 2월1일/2월2일        ※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이 기준보수 미만일 경우 상실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</li> <li>4. “상실사유”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.  <b>【상실(이직)사유 코드】</b>        ◆ 자진이직 : 11.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이직, 12. 사업장 이전, 노무제공조건 변동, 보수 체불, 계약 변동 등으로 자진이직        ◆ 사업장 사정과 피보험자(예술인, 노무제공자)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: 22. 폐업·도산 23.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이직(계약해지 포함)        26. 피보험자(예술인, 노무제공자)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       ◆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: 32. 계약기간 만료, 사업(공사) 종료        ◆ 기타 : 41. 고용보험 비적용 43.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기준 미충족 45.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</li> <li>5. “예술인 보수총액”란의 “해당 연도”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간보수 총액을 적되, “전년도” 란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.</li> <li>6. “노무제공자 월보수액”란의 “해당 월”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월(이하 “이직월”이라 합니다)의 월 보수액을 적고, “전월”란은 이직월의 직전월(이하 “이직전월”이라 합니다)의 월보수액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적습니다.        ※ 이직월 및 이직전월 외에도 피보험 취득기간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 월이 있는 경우,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(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(별지 제22호의12서식)를 작성하여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 바랍니다.</li> </o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    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: 「소득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·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   </div>
산재보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이직일” 란에는 노무제공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.</li> <li>2. “이직사유” 란에는 해당하는 노무제공 종료 사유의 [ ]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</li> <li>3. 전속성이 없는 렉서비스/대리운전기사의 경우 “[ ]전속성 없음” 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</li> </ol>

### 처리절차

